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52729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0,585,903원 및 그중 60,360,393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3. 9. 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3. 1.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60,585,9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0,585,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28/7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3. 1. 19. 체결한 매매계약과 2023. 5.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444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3. 5. 12. 접수 제3472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39/7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23. 1. 25. 체결한 매매계약과 2023. 5.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3. 1. 25. 접수 제522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3. 5. 16.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12. 27. 체결한 매매계약과 2023. 6.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2. 12. 27. 접수 제11131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23. 6. 23. 접수 제4606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 부분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들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한다)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20. 11. 20. E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은 2023. 2. 21.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3. 6. 2. E은행에 보증채무금 60,360,393원(= 원금 6,000만 원 + 이자 360,39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가지급금 225,510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23. 6. 9. 피고 B에게 이행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거부 등 기타 책임경영이행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액인 6,000만 원을 2023. 6. 23.까지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60,585,903원(= 60,360,393원 + 225,510원) 및 그중 60,360,393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9. 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위 책임경영이행 약정에 따라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23. 1. 19. 자 매매계약을,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김포시 F 전 767㎡가 2023. 4.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인 F 전 504㎡ 및 G 전 26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228/7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23. 1. 19. 자 매매예약 및 2023. 5. 12. 자 매매계약을, ③ 제2부동산 중 539/7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2023. 1. 25. 자 매매예약 및 2023. 5. 16. 자 매매계약을, ④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22. 12. 27. 자 매매예약 및 2023. 6. 23. 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 후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에 관한 2023. 1. 19. 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각 계약에 기한 가등기,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다 제1 내지 15호증, 을라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과세정보회신 결과,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22. 12. 27., 2023. 1. 19., 2023. 1. 25.경 기준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984,300,000원인 제1부동산, 시가 389,100,000원인 제2부동산, 김포시 H 과수원 1644m²[위 토지는 2023. 5. 11. H 과수원 1021.3m² 및 I 과수원 622.7m²로 분할되었고, 2023. 6. 30. H 공장용지 1021.3m²(별지 목록 제3. 가항 기재 부동산) 및 I도로 622.7m²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등 전후를 합하여 'J 토지'라 한다], 김포시 K 소재 본점, 김포시 L 소재 지점 및 김포시 M 소재 창고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합계 11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 A이 위 본점, 지점, 창고에 2016. 5.부터 2022. 12.경까지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및

건축비 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금액이 957,774,982원이며, 그중 2022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합계액이 555,741,90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J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이 2022. 3. 3. J 토지를 2억 4,9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22. 7. 19. J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 A은 2022. 10. 1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J 토지 및 지상 제조장 건물 501.6㎡를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라 2023. 6. 23. J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J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각 등기에 의하면 거래가액은 J 토지 5억 원, J 건물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2. 12.경 및 2023. 1.경 J 토지의 가액은 5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채무 181,655,025원, N조합에 대한 채무 1,284,786,840원, O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P에 대한 채무 800,000,000원, Q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18,631,3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51,710,000원 합계 3,116,783,165원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유형자산의 취득년도에 따른 감가를 감안하더라도 약 3,539,141,909원(1,984,300,000원 + 389,100,000원+ 110,000,000원+ 555,741,909원+ 500,000,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소극재산인 3,116,783,165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은 241,297,334원(제1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제1부동산으로 담보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2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은 47,315,825원(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제2부동산으로 담보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제3. 가.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은 0원(별지 목록 제3. 가항 기재 부동산 시가에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이므로, 별지 목록 제3.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12. 27. 자 매매예약, 제1부동산에 관한 2023. 1. 19. 자 매매계약, 제2부동산 중 228/767 지분에 관한 2023. 1. 19. 자 매매예약, 제2부동산 중 539/767 지분에 관한 2023. 1. 25. 자 매매예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3. 5. 12. 및 2023. 5. 16. 기준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89,100,000원인 제2부동산, 시가 500,000,000원 상당인 J 토지,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합계 110,000,000원과 위 유형자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채무 185,264,487원, O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Q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25,689,92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59,345,859원 합계 750,299,966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에 의하면 유형자산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999,100,000원으로 소극자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제2부동산 중 228/767 지분에 관한 2023. 5. 12. 자, 제2부동산 중 539/767 지분에 관한 2023. 5. 16. 자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23. 6. 23.경 기준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00,000,000원 상당인 J 토지와 2023. 6. 23.경 신축한 시가 합계 500,000,000원 상당인 J 건물,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합계 110,000,000원과 위 유형자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채무 187,451,552원, O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26,277,01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59,345,859원 합계 653,074,421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 A의 적극재산이 소극자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3부동산에 관한 2023. 6. 23.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과 ① 피고 C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2023. 1. 19. 자 매매계약, ② 피고 C 사이의 제2부동산 중 228/767 지분에 관한 2023. 1. 19. 자 매매계약 및 2023. 5. 12. 자 매매계약, ③ 피고 D 사이의 제2부동산 중 539/767 지분에 관한 2023. 1. 25. 자 매매계약 및 2023. 5. 16. 자 매매계약, ④ 피고 C 사이의 제3부동산에 관한 2022. 12. 27. 자 매매계약 및 2023. 6. 23. 자 매매계약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나라

별지